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박 철 현**

이 연구는 80년대 이후 범죄학계에서 큰 논쟁이 되어온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 즉 연령-범죄곡선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들을 이용한다. 첫째, 집적된 자료로서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고, 둘째, 개별적 자료로서 이전의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 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경찰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과, 셋째, 또 하나의 개별적 자료로서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일반적으로 연령-범죄곡선의 우경편포하는 형태는 범죄경력에 초기에 진입한 사람들과 늦게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의 범죄율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 왔다. 모피트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의 정점이 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갈프레더슨과 허쉬는 후기진입자나 조기진입자 모두 유사한 형태의 연령별 범죄율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개별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지역과 시기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 모양을 나타낸다는 갈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이것은 또한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 상이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범죄율의 정점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후기진입자의 범죄율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모피트의 주장을 지지한다.

핵심단어: 연령-범죄곡선, 연령과 범죄, 정점연령, 참여율, 입건율, 개인범죄율

*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준 익명의 논평자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한국인구학회 2000년 후기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되었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I . 문제제기

최근에 범죄학 내에서 부각된 한 중요한 분야는 개인의 범죄경력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범죄경력' 이란 어떤 개인이 일생을 통해서 범하는 범죄들의 연속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직업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직업을 갖는 등의 직업경력을 쌓듯이 범죄를 해 나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이렇게 범죄경력의 전개를 살펴보는 일은 필연적으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범죄경력을 구성하는 일련의 범죄들이 모두 시간의 선후에 따라 배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배열된 범죄들은 모두 인간행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연령과 이런 행위들의 관계를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령이라는 요인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치게 되는 생애과정(life-course)과 관련되고, 이러한 생애과정들은 모두 인간의 행위에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생애과정들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그만두거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남성이 군대에 갔다 오는 것은 단순히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 이외에 보다 성숙된 인간으로 바뀌어 오는 전환점으로 종종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생애의 중요한 과정 또는 전환점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 있어 연령을 따라 유사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또한 이러한 생애과정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범죄와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연령과 범죄의 관계, 다시 말해서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령-범죄곡선(age-crime curve)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곡선의 모양과 관련하여 80년대 범죄학에서 대논쟁(Great Debate)이 있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허쉬와 간프레더슨(Hirschi and Gottfredson, 1983)의 주장에서 출발했는데, 그들은 이 연령-범죄곡선이 1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범죄의 빈도가 완만히 줄어드는 모양을 나타내고, 나아가서 이것은 인종, 성, 국가, 시대 등 어떤 요인에도 관계없이 동일한 분포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연령-범죄곡선의 일반성이라고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현재 범죄학계의 주된 조류는 이러한 분포가 어떤 다른 요인들에 관계없이 일반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뒷

받침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다수 양산되어 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령-범죄곡선이 과연 한국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며, 만약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추정해 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곡선의 모양은 집적된 자료인 범죄통계는 물론, 개인적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자료, 즉 집적된 공식통계와 개별적 공식기록, 그리고 개별적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자료를 동시에 살펴보고, 과연 한국에서도 연령-범죄곡선의 일반적인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980년대를 전후하여 범죄학에서는 범죄경력, 그 중에서도 연령, 참여율(participation rate) 및 개인범죄율(individual crime rate)과 관련하여 큰 논쟁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처음에는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하여 그린버그(Greenberg, 1977: 1985)가 쓴 논문에 대하여, 허쉬와 간프레더슨(Hirschi and Gottfredson, 1983: 1985: 1986)이 비판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령별 범죄의 분포는 곧 범죄경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범죄경력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린버그는 “비행과 사회의 연령구조(Greenberg, 1977)”라는 논문에서, 그동안 범죄학에서 별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던 분야인 연령과 범죄, 즉 범죄의 연령분포와 그것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입건율(arrest rate)의 정점연령(peak age)이 범죄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절도, 침입절도, 차량절도는 15-16세에 정점연령이 나타나는데 비해, 중폭행(aggravated assault)의 정점연령은 21세였고, 약물범죄는 19세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연령분포에서의 차이는 미국사회에서 청소년이 처한 구조적 위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을 탈출하는 역사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에 주목하고 이 과정이 청소년들에게 사회생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따라서 청소년의 절도는 동년배와의 사회활동에 참가하려는 욕구와 여기에 필요 한 합법적 자금동원수단의 부재라는 아노미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린버그는 또한 막스주의적 입장을 따라 학교를 사회적 차별을 공고히하는 지위체계로서 인식하고, 특히 하층계급의 학생들은 자율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을 통제하려는 학교의 시도 사이의 모순에 노출되게 된다고 한다. 개인적 능력이 곧 지위를 결정한다는 평가기준이 공유되는 곳에서, 하층계급의 학생들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유지해야하는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청소년들의 비행은 이러한 저하된 자아존중감을 복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자율성을 제한받지 않을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자아존중감을 손상당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를 떠나는 것은 비행의 동기가 되는 중요한 원천들을 제거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그는 통제이론을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공식적, 비공식적 처벌이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따라서 점점 범죄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범죄를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Greenberg, 1977).

그린버그는 또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은 비행빈도를 보이는 점에 주목하고, 하층계급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모계가구에서의 모성지배(maternal domination)와 모성동일시(maternal identification)에 대한 남성적 반항이 남성적 범죄, 즉 폭력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하층계급의 소년들은 어머니와 자신들을 동일시 하다가, 후에 남성의 역할을 해야할 때 불활실성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남성지위불안감(masculine status anxiety)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모친의 순응적 가치를 거부하고 남성적 형태의 비행에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남성지위불안감은 성인남성의 실업율이 예외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가장 늦게 나타날 것이고, 이것은 폭력범죄의 연령별 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정점연령을 설명한다는 것이다(Greenberg, 1977).

허쉬와 갈프레더슨은 “연령과 범죄의 설명”이라는 논문에서, 범죄의 연령분포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을 통해서 변함없이 일정하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의 연령별 분포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인구학적 집단에 관계없이, 그리고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분포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의 범죄의 원인은 다른 어떤 시점에서의 범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직접효과(direct effect)”이고,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범죄학적인 변수나 그것의 조합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3).

그들은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에 대한 그린버그의 두 가지 설명에 대해 비판한다. 그린버그는 범죄의 정점연령이 범죄유형별로 상이한 이유가 한편으로는 남자청소년에 대한 학교의 통제와 남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력간의 긴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허쉬와 간프레더슨은, 티틀(tittle, 1980)의 자기보고식 자료(self-reported data)를 인용하며, 대인범죄와 재산범죄가 같은 정점연령을 나타내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그리고 성인기에 연령에 따른 범죄의 감소를 공식, 사회통제의 증가에 따른 범죄비용의 증가로 설명하는 그린버그의 주장에 대해, 그들은 첫째, 공식적 처벌이 범죄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아무런 경험적 증거가 없다는 점과, 둘째, 그린버그는 청소년기 후반과 성년기 초반의 범죄율의 차이는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이후 예를 들면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29세에서 34세 사이의 범죄율의 감소를 잘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마지막으로 범죄성향(criminality)의 정점연령은 범죄통계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이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그린버그가 제시하는 공식통계의 정점연령에 맞춘 사후적 설명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3). 연령에 따른 범죄의 감소, 즉 연령에 따른 범죄경력에서의 은퇴가 기존의 범죄학적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는 허쉬와 간프레더슨의 주장에 동조하여, 심리학자 가브(Gove, 1985)는 대부분의 사회학적 범죄이론이 범죄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이나 범죄생활의 초기단계는 잘 설명하고 있으나 범죄행동의 중단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예를 들면 심리학적 성숙, psychological mature)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연령, 범죄, 그리고 사회적 설명(1985)”이라는 논문에서 첫째, 횡단적 설계의 시간지체(time lag), 인과적 설명의 순서(casual ordering)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종단적 연구의 우월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둘째, 허쉬와 간프레더슨이 주장한 연령별 범죄분포의 일반성이 제한된 자료의 잘못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이 경험적 증거로서 제시한 티틀(Tittle, 1980)의 자료는 연령별 범죄의 분포를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넓은 범주¹⁾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엘리어트와 그의 동료들(Elliott et al., 1978)의 보다 정밀한 자료를 통하여 재산범죄와 대인범죄의 상이한 정점연령을 보여주었다. 그 외 그린버그는 범죄의 연령분포의 인종별, 민족별, 성별, 도-농별 차이를 나타내는 로브(Laub, 1983)등의 많은

1) 티틀의 자료는 15-24, 25-44, 45-64, 65+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적 증거를 들어 범죄의 연령분포의 일반성을 반박하였다. 셋째, 범죄성향이 공식 통계상의 정점연령에 비해 훨씬 이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린버그는 범죄성향의 정점연령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왜 범죄가 청소년기 중반에 정점을 이루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은 동일하게 왜 청소년기 초기에 피크를 이루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자신이 주장한 긴장이론과 통제이론의 통합에 의한 설명은 비사회적 요인들이 범죄의 연령분포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다만 이 분포의 상당부분이 사회학적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며, 거부하는 것은 생물학과 같은 비사회적 요인이 유일하게 그것을 설명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하였다(Greenberg, 1985).²⁾

허쉬와 간프레더슨은 그린버그와 그들의 입장의 차이가 주로 범죄(crime)와 범죄성향(criminality)을 구별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하게 된다. 그들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 비행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범죄는 감소한다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개념보다는 그 이상이 요구된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범죄는 특별한 필요조건들(예를 들면 행위, 기회, 희생자 등)을 전제로 하는 제한된 사건들인 반면, 범죄성향은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에서의 안정적인 개인별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 따라서 범죄성향은 단지 범죄행동에 선행하는 여러 요인들 중의 하나이고, 범죄행동은 이러한 범죄성향의 불완전한 척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연령에 따른 범죄에서의 은퇴현상을 성숙적 개선(maturational reform)으로 설명하는 것은 (감소하는) 범죄율의 변화와 (연령에 따라 일정한) 범죄성향의 변화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그들의 연령이론(age theory)은 범

2) 허쉬와 간프레더슨은 이러한 그린버그의 논문에 대한 AJS에 같이 실린 짧은 논평을 통해, 주로 범죄의 연령별 분포의 일반성을 다시 주장하였다. 그는 그린버그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경험적 자료를 들어 그린버그를 비판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린버그가 로브(Laub, 1983)의 경험적 자료를 잘못 해석했다는 점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논문에서 자신들의 그 동안의 두 가지 오류를 인정하였다. 첫째, 작은 한 국가표본(national sample)에 기초한 종단적 연구의 발견에 대해 그들의 논문(1983) 서문에서 크게 신뢰성을 보이다가 본문에서는 이 연구들에 대해 불신하는 비일관성을 보여주었는데, 허쉬와 간프레더슨은 여기에 대해 종단적 연구가 장점과 함께 단점을 가진다는 그들의 입장과 오히려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둘째, 그린버그의 비판을 받아들여 한 역사적 기간과 다른 역사적 기간 사이에 작용하는 변수들의 동일한 설명력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5).

죄성향과는 독립적으로 범죄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다룬다고 한다(Hirschi and Gottfredson,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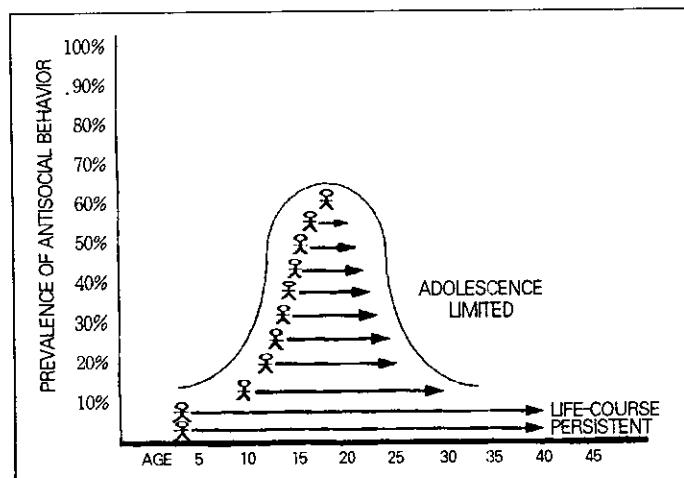
페링턴(Farrington, 1986)은 연령에 따른 범죄유형별 정점연령이 일정하기보다는 상이하다는 그린버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는 이러한 정점연령이 간프레더슨과 허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발생율(incidence)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율(participation)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새로이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의 연령별 분포는 전체 범죄율의 곡선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공식통계에서 보이는 정점연령은 참여율에 서의 정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활동적 범죄자들(active offenders)에 있어서 개인범죄율(individual crime rate)은 범죄경력의 지속기간 동안 일정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적된 자료의 범죄의 분포는 모든 범죄자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시작, 지속,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 범죄자들의 개인범죄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이 범죄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의 분포(참여율)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연령에 따른 범죄의 감소는 연령 외의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사회학적 설명들을 소개하였다.

모피트(Moffitt, 1993)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하는데, 그는 패터슨(Patterson et al., 1989)과 유사하게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두 가지 유형(taxonomy)의 범죄자, 즉 생애지속형(life-course-persistent)범죄자와 청소년기한정형(adolescence-limited)범죄자로 구분하고, 생애지속형범죄자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이 친 사회적 대안적 행동을 배울 기회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늦게 비행을 시작하고 이들의 비행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한정된다고 한다. 생애지속형범죄자가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이들은 비연속성을 특징으로 한다. 모피트는 청소년기한정형 범죄자가 범죄를 시작하는 이유로서 성숙격차(maturity gap), 흉내(mimicry) 그리고 강화(reinforcement)의 3가지를 들고 있다. 즉 생물학적 연령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연령의 역할의 격차가 현대에 와서 점점 벌어짐으로써 생기는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숙격차로 인해 청소년들은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이것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생애지속형범죄자를 흉내내게 되는데 이때 생애지속형범죄자는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역할(magnet role)을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청소년들을 부모들의 보호로부터 벗어남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범죄의 부정적 결과에 의해 그들이 사회적

으로 강화될 때, 범죄를 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는 일찍 범죄 경력을 중단하게 되는데, 그것은 청소년기한정형범죄자들이 범죄를 시작하게 했던 요인들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간프레더슨과 허쉬는 연령에 따른 범죄의 감소가 심지어 가장 활동적인 범죄자들에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발생율과 참여율을 구별하는 것도 이론적 연구에서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들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글룩 부부(Glueck and Glueck)의 종단적 데이터를 인용하고, 이를 통해 범죄경력연구에서 논의되는 참여율이나 개인범죄율(λ)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모두 비슷비슷하며 단지 이것은 연령의 분포를 반영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전문용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상황적인 요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범죄성향에서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글룩 부부의 데이터에서 범죄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아도 연령에 따른 범죄빈도의

〈그림 1〉 연령-범죄곡선에 대한 모피트의 설명



자료: Moffitt, 1993.

3) 즉 점점 성인이 되어감에 따라 느끼는 성숙격차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상황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고, 친사회적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오랜 이웃으로부터 떠나고, 또는 직업을 얻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분포에서 별다른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따라서 글뤽부부(Glueck and Glueck)의 종단적 데이터는 범죄경력에 있어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음주와 가족 및 아동학대와 같은 약한 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향은 20대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Gottfredson and Hirschi, 1986; 1987).⁴⁾

그들은 계속하여 종단적 연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발전에 관한 선형적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즉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가 범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종단적 연구에서 나온 많은 결과들이 횡단적 연구의 결과를 재확증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들이는 종단적 연구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또한 리치몬드 데이타(Richmond Youth Project, Hirschi, 1969)를 이용하여 발생율과

- 4) 그러나 그들은 패링턴의 데이터에서 참여율과 개인범죄율을 혼동하여, 심지어 활동적 범죄자의 (그들에 의해 잘못 이해된) 개인범죄율도 범죄의 연령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된다.
 5) 먼저 개인범죄율(individual crime rate, 또는 individual frequency rate, 또는 Lambda)이란 일정기간 동안 어떤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빈도를 말하는데, 대부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중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건수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가장 전형적인 정의는 어떤 사람이 1년간 범하는 평균 범죄건수로 정의되는데, 이 경우 식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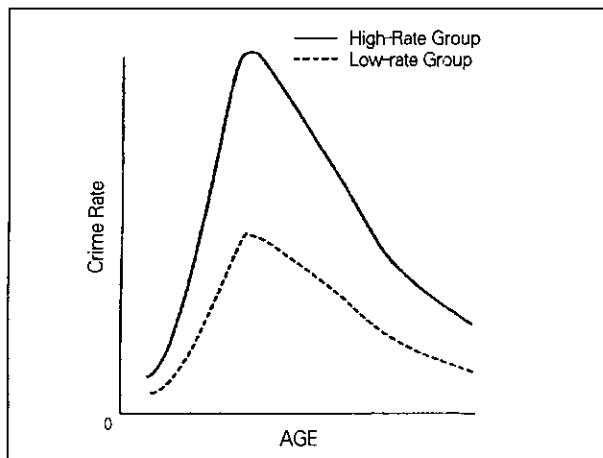
$$\text{개인범죄율}(\lambda) = \frac{\{\text{총범죄횟수} * 12개월\}}{\text{비구금기간}}$$

위의 식에서 비구금기간(street time)이란 어떤 범죄자가 자유로이 범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통 시설내에 구금된 기간을 제외한 자유로운 기간을 말한다. 위 식에 나타난 개인범죄율의 의미는 범죄자가 실제로 범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간동안 얼마나 자주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년 동안에 2번의 범죄를 했고, 이로 인해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면, 이 사람의 개인범죄율은 $= 2 * 12 / 24 = 1$ 이다. 즉 이 사람은 1년에 평균 한 번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발생율(incidence)이란 어떤 단위기간(예를 들면 17세)에 발생한 범죄율을 말하는데, 개인범죄율도 이 발생율의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생율은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데, 보통 발생율이라고 하면 횡단적 자료, 즉 집적된 자료에서 얻어진 발생율을 가리킨다. 이에 비해 참여율(participation)은 확산도(prevalence)라고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단위참여율(point participation)과 누적참여율(cumulative participation)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참여율이라고 하면 단위참여율을 가리킨다. 단위참여율이란 어떤 단위시점에서 전체 활동적 범죄자들(active offenders) 중 새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반면 누적참여율은 전체 활동적 범죄자들 중 시작시점에서 시작하여 어떤 단위시점까지의 새로 참여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 참여율의 의미는 어떤 인구집단 중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있는지, 즉 전체 인구집단에서 범죄자가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성격상 개인범죄율과는 달리 횡단적 자료와 종단적 자료 모두에서 산출해 낼 수 있다.

참여율 그리고 개인범죄율을 계산하고 발생율과 개인범죄율이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여러 개념들이 모두 상호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 and Hirschi, 1987; 1988).⁵⁾ 따라서 간프레더슨과 허쉬에게 있어서 연령-범죄곡선은 어떤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은 비행율을 보이는 집단이나 낮은 비행율을 보이는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블룸스타인과 그의 동료들은 같은 잡지에 실린 2편의 논문들을 통해,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들은 간프레더슨과 허쉬가 주장하는 달리 어떠한 선형적 가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범죄경력의 모든 특징을 단지 하나의 요인이 결정한다면 모든 범죄경력의 특징들은 상호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상이한 범죄경력의 특징들은 각각의 다른 설명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오히려 허쉬와 간프레더슨이 범죄경력의 기본적 개념들 중의 하나인 참여율과 발생율 그리고 개인범죄율을 혼동하여 활동적 범죄자들의 개인범죄율도 전체적 범죄율과 유사한 분포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이 그릇된 분석에 근거하여 마침내 종단적 연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반박한다. 특히 간프레더슨과 허쉬의 재분석은 개인범죄율에서 비구금기간(street time)을 무시한

〈그림 2〉 연령-범죄곡선에 대한 간프레더슨과 허쉬의 설명



자료: Gottfredson and Hirschi, 1990.

분석으로 이는 개인범죄율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다고 비판하였다(Blumstein et al., 1988a; 1988b).⁶⁾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연령-범죄곡선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하나는 범죄를 범하는 모집단이 일부의 지속적 범죄자집단과 대부분의 일시적 범죄자집단으로 명확히 나누어지며, 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상이한 범죄율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또한 이 두 집단들의 연령별 범죄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점진적으로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현상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연령의 직접효과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령-범죄곡선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범죄경력에서 은퇴하는 과정은 개인의 행동에서 합리성의 발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 범죄경력이 점점 폭력적 행동보다는 도구적 행동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박철현, 1999a). 이러한 과정은 연령-범죄곡선의 설명에 있어서도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폭력적 행동의

6) 티틀(Tittle, 1988)은 같은 잡지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 범죄경력에 관한 논쟁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평을 하였다. 첫째, 간프레더슨과 허쉬는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연령과 범죄에 관한 보다 폭넓은 자료를 일반화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강한 적들에 대적하려는 욕심에서 몇몇 범죄경력에 관한 자료를 잘못 해석하였다. 그런데 블룸스타인과 그의 동료들은 또 다른 방향에서 오류를 저질렀는데, 즉 연령에 따라 범죄율이 감소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집단에 있다는 믿음에서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결과들을 과도하게 일반화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개인범죄율의 안정성은 몇몇 개인들에게 경찰의 감시가 안정적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은 거의 무시하고 있다. 둘째, 종단적 설계와 횡단적 설계 중 어느 것이 선호되는지는 목수에게 망치와 톱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묻는 것과 같다. 즉 어느 것이나 고유의 장단점이 있고 주어진 과제에 따라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오히려 맥락적 차이(contextual variation)에 대한 일반적 경향에서의 이탈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간프레더슨과 허쉬는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변하지 않는 연령/범죄관계와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은 이론적 중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한 반면, 블룸스타인과 그의 동료들은 이론을 통해서 범죄경력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다. 티틀은 이 상황을 “우리는 이론화하기를 거부하는 이론가들과 이론화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지 않는 학자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함축적인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헤이건과 팔로니(Hagan and Palloni, 1988)는 같은 잡지에서 이 논쟁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정부에 의한 연구비 후원을 들리싼 갈등을 지적하였다. 그들은 범죄의 발생을 생애과정의 어떤 사건의 발생으로서 개념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상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이것의 비용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거부감이나 낙인의 양에 있어서, 청소년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40세의 성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성인에게 있어서 폭력적 행동은 자신으로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된다. 반면 도구적 범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자신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된다.

연령의 효과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이라면, 이러한 개인의 합리성의 증가 역시 상이한 집단의 범죄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찍 비행을 시작한 지속적인 범죄자들의 경우 이들에게 부여된 낙인이나 취약한 사회적 자본에 의해 범죄적 대안은 다소 덜 비용이 드는 선택이다. 그러나 늦게 비행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폭력범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발전은 모든 개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경기의 하강은 높은 연령대의 도구적 범죄에의 참여를 촉진하여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을 뒤로 이동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것이 심화되면 연령범죄곡선의 모양을 변경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여러 사회학적 요인에 따라서 연령범죄곡선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II.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발생통계의 하나인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이다. 이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범죄통계로서 범죄통계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한계를 공유한다.

둘째,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한 후 1987년 한 해 동안 출소한 출소자들($N=988$)에 대한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실시된 경찰전산망을 통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수집된 3,541건의 입건기록이다. 이 자료의 표본은 대체로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다소 중한 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의 연령도 전체 범죄자에 비해서 다소 높은 연령대에 치우쳐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소 지속적인 범죄자들이 많이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⁷⁾

7)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철현(1999b)을 참조할 것.

셋째, 2000년 8월에 실시된 8개 성인교도소 및 1개 소년교도소(이상 모두 재범이 상 수용소임), 그리고 1개 소년원에서 실시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N=979$)를 통해 수집된 10,198건의 범죄에 대한 자료들이다. 이 자료는 횡단적 자료에 가까운 자료이며, 두 번째의 자료와 유사하게 다소 중하고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범죄자들에 치우쳐 있는 표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보고식 조사를 통해서 범죄의 암수(dark figure)를 줄인 가치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⁸⁾

IV. 분석결과

여기서는 이상 언급된 세 가지의 자료, 즉 집적된 공식통계, 개별적 공식기록, 자기보고식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각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외국의 여러 논의에 의하면, 집적된 자료인지 아니면 개별적 자료인지에 관계없이 연령-범죄곡선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가 왜 나타나는지는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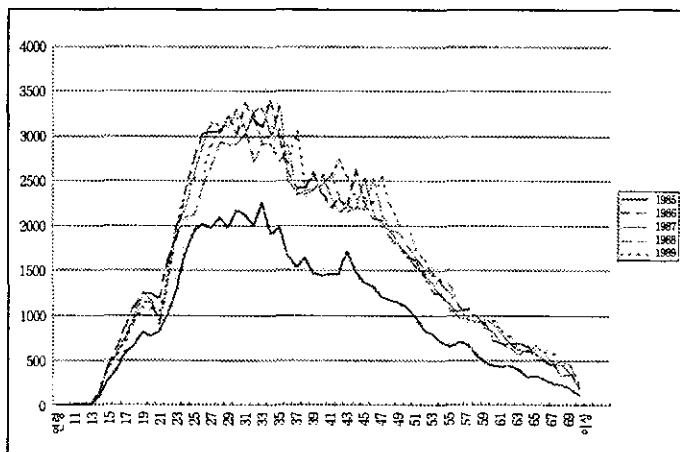
1. 공식통계에 나타난 연령-범죄곡선

일반적으로 범죄의 정점연령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공식통계상의 연령-범죄곡선을 5년 정도의 단위로 잘라서 살펴보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기본 범죄통계인 경찰과 검찰의 『범죄분석』이 모두 연령구간을 너무나 넓게 잡고 있으므로⁹⁾ 연령별 범죄율을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검찰청 전산실의 협조를 통해 1세 단위의 연령별 범죄건수를 입수하였다. 다음의 <그림 3>은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연령-범죄곡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연령대별 범

8)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철현(2000)을 참조할 것.

9) 이것은 특히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의 논란의 초점이 되는 35세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림 3〉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의 연령-범죄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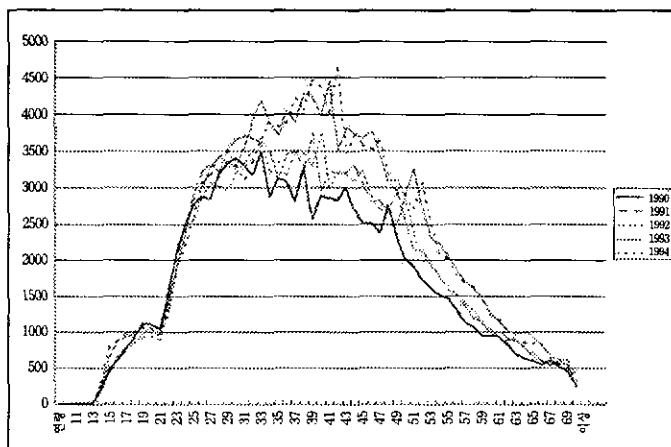
자료: 대검 전산실.

죄율에는 각 연령대의 인구수가 통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일반적 관례에 따라 총범죄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범죄가 모두 제외되어 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한국의 연령-범죄곡선도 간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대로 다소 정점연령이 30대 중반 정도로 높기는 하지만, 우경편포하는 매우 전형적인 형태의 연령-범죄곡선의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1985년만 다소 전체적인 범죄율이 낮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연령범죄곡선은 거의 일치되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 20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범죄율의 하락은 한국에서 군입대가 가지는 무력화효과(incapacitation effects)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의 연령-범죄곡선을 살펴보면(〈그림 4〉), 전체적으로 분포의 모양이 대체로 좌우가 대칭인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2년까지는 그나마 우경편포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가, 1993년 이후에는 급격히 정점연령이 34세 전후로 이동하여 좌경편포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1993년을 기점으로 한국의 범죄현상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만 20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군입대의 무력화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95년 이후의 연령-범죄곡선을 살펴보면(〈그림 5〉), 1995년에서 1997

〈그림 4〉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의 연령-범죄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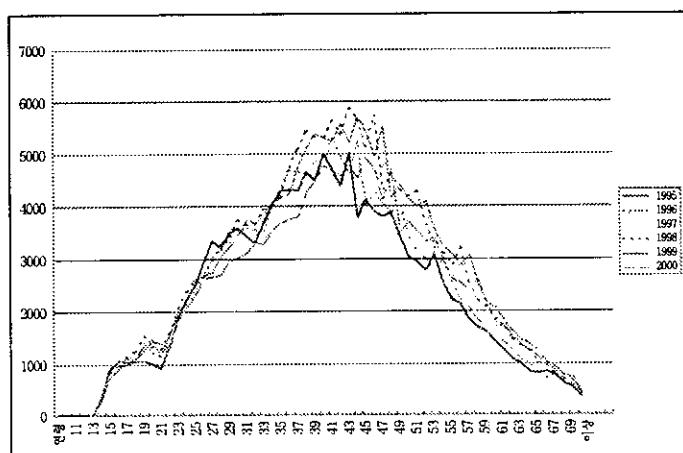


자료: 대검 전산실

년 사이에는 1993년 및 1994년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다가, 1998년 이후에는 오히려 정점연령과 정점연령보다 약간 높은 연령대의 범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에 들어서는 대체로 범죄율 자체가 많이 낮아졌지만 정점연령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연령대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며, 이것이 연령-범죄곡선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경우에도 만 20세 전후의 군입대의 무력화효과는 여전히 뚜렷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공식통계를 통해 본 결과는 갈프레더슨과 허쉬의 주장과는 달리 연령-범죄곡선이 항상 우경편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공식통계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은 정점연령이 상당히 높은 연령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보다 중요한 것은 분포의 모양자체가 변해왔고, 현재는 우경편포라기보다는 정규분포 또는 오히려 정반대의 좌경편포의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연령이 범죄율의 연령별 분포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5〉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연령-범죄곡선



자료: 대검 전산실

2. 개별적 공식기록에 나타난 연령-범죄곡선

이상의 집적된 자료에서 연령-범죄곡선이 다른 외국의 결과와는 달리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곡선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율(crime rate), 즉 발생율(incidence rate)은 집적된 자료에서는 물론 개별적 자료에서도 산출이 가능하므로 여기에서는 개별적 자료를 통해 이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하게 될 발생율은 입건율(arrest rate, A)로서 어느 일정기간 동안 총 인구당 입건된 빈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의미는 조사대상자들을 전체 인구수로 가정했을 때 일정 기간동안에(일정 연령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건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나 사회에서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통 범죄율을 논의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이러한 입건율을 논의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음의 〈표 1〉은 15세에서 30세까지의 연령대에서 각각의 입건빈도와 누적 입건빈도, 각 연령대의 단위인구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입건율과 ‘인구 10만 명당

'입건율' (범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먼저 입건빈도를 살펴보면, 만 16-17세에 급격히 증가하여 만 20세에 180건의 입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만 24세가 174건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만 19세에서 만 24세 사이가 150건 이상의 높은 발생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연령대의 단위인구수는 만 22세까지 986명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약간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연령별 입건빈도를 연령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한 수치인 입건율을 살펴보면, 입건빈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만 20세에 가장 높은 .185였고, 이후로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 자료(individual data)를 통해 살펴 본 입건율도 공식통계에서 나타나는 입건율과 유사한 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준의 외국에서의 연구에 의해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분포와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은 만 20세와 만 24세

〈표 1〉 연령별 입건율(arrest rate, A): 만 15세 - 만 30세

연령(만)	입건빈도	누적빈도	인구수 ¹⁾	입건율 ²⁾	10만명당 입건수 ³⁾
15	16	23	986	.016	1,623
16	36	59	986	.037	3,651
17	85	144	986	.086	8,621
18	133	277	986	.135	13,489
19	160	437	986	.162	16,227
20	182	619	986	.185	18,458
21	160	779	986	.162	16,227
22	158	937	986	.160	16,024
23	154	1,091	985	.156	15,635
24	174	1,265	979	.178	17,773
25	145	1,410	988	.150	14,964
26	135	1,545	984	.143	14,286
27	131	1,676	976	.145	14,491
28	126	1,802	962	.145	14,533
29	106	1,908	911	.131	13,086
30	115	2,023	863	.154	15,354

주: 1) 단위 연령에서 생존해 있었던 인구(추적기간(1987년-1993~4년)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감안 안됨).

2) 입건빈도를 단위인구수로 나눈 수치임.

3) 입건율에 10만을 곱한 수치임.

10) 이것은 조사대상자들의 범죄행적이 이 연구의 범죄경력조회 시점(93년과 94년)에서 결단됨으로써 일부 소수의 조사대상자들의 이후 연령대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에 각각 두 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앞의 공식통계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군대를 복무해야 하는 이유로 인한 무력화 효과(incapacitation effects)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첫째, 실제로 입건율이 두 개의 정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범죄성향이 높은 사람이 표집되었을 가능성, 즉 표집오차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이 표에서 점점 단위인구수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87년 출소 당시 높은 연령대의 인구가 단지 적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체계적 오차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낮은 연령이나 높은 연령이나 특별히 범죄성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의 정점연령이 대체로 낮은 연령대(30세 이하)에서 논의되는 점과, 이 연구에 표집된 조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중범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비행연구에서의 연령별 발생율 분포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범죄자들의 경우 일반인이나 비행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높은 개인범죄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건율도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연령대에서 발생율이 높은 것은 한국의 공식통계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집오차의 문제로만 취급되어서는 안될 성격의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자료를 통해서 다시 분석해 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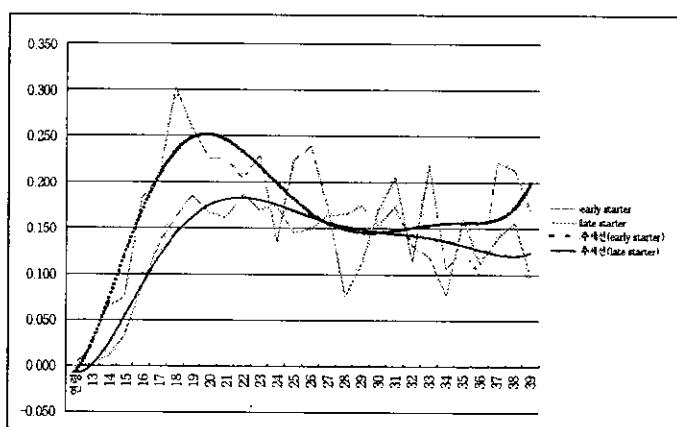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인 첫 직업이나 인구학에서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초혼연령과 같이, 범죄경력의 연구에서 초범연령이나 초범유형은 범죄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혼연령이 빠를수록 출산력이 높아지며 따라서 다산(多產)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일단 초범연령이 낮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긴 범죄경력을 가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측면외에도 초범연령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그의 범죄경력이 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물론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나이에 초범을 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적 개입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중한 범죄를 범할 수도 있으며, 또한 보다 범죄경력을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실제로 범죄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초범연령이 중요하다는 점은 글

록부부가 이미 오래 전에 지적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언급해 왔다.

다음의 <그림 6>은 이러한 추세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연령별 입건율을 범죄 경력에의 진입연령에 따라 나누어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¹¹⁾ 우선 조기진입자의 경우 정점연령이 명확하게 봉우리를 그리며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후기진입자 의 경우 상대적으로 봉우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정점을 갖기는 하지만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연령에서 나타나는 봉우리의 높이에는 조기진입자들이 훨씬 더 많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율(incidence rate)은 참여율(participation rate, or prevalence rate)과 개인범죄율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참여율은 단위참여율(current participation rate, b)과 누적참여율(cumulative participation rate, B)로 나누어지는데, 단위참여율은 어떤 한정된 기간동안에 새로이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누적참여율은 어떤 기간까지 누적하여 새로이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을

<그림 6>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의 연령별 입건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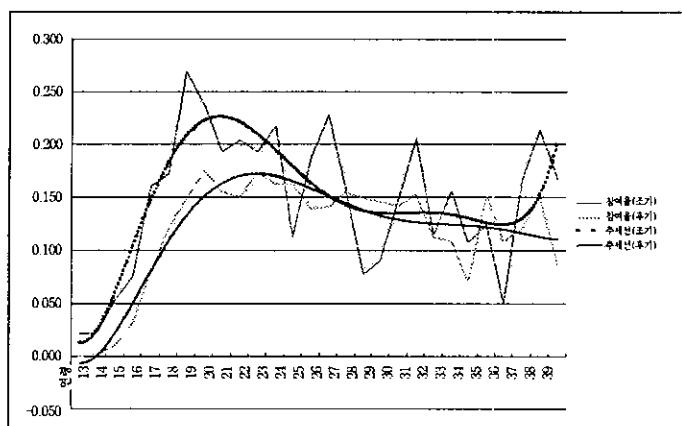
11) 이 자료에서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된 것은 교도소 재소당시에 작성된 자료인 수형자분류심사표에 있는 자기보고된 첫 비행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만 15세 이전이 조기진입자 그리고 만 16세 이후가 후기진입자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래프에 제시된 연령별 입건율은 범죄경력조회 결과이므로, 두 자료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 즉 후기진입자도 15세 이전에 범죄경력이 나타날 수 있다.

말한다. 따라서 연령을 참여율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적용하면, 단위참여율은 어떤 연령대에 범죄를 범하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누적참여율은 어떤 연령까지 첫 범죄를 한 사람의 비율, 즉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참여율이 가지는 의의는 이 수치가 어떤 기간 동안 어떤 집단에서 범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데 있다고 하겠다.

다음의 <그림 7>은 이것을 조기비행자와 후기진입자로 나누어 연령별 참여율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려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는 입건율의 그래프 모양과 매우 흡사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생율이 참여율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발생율의 연령-범죄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연령별로 전체 모집단 중에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변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해석할 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참여하지 않는, 즉 범죄를 그만두는 사람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보면, 참여율의 차이는 정점연령을 전후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만, 그 이후의 약 10여년 간은 거의 비슷한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령별 참여율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 보면, 전체적으로 단위참여율은 만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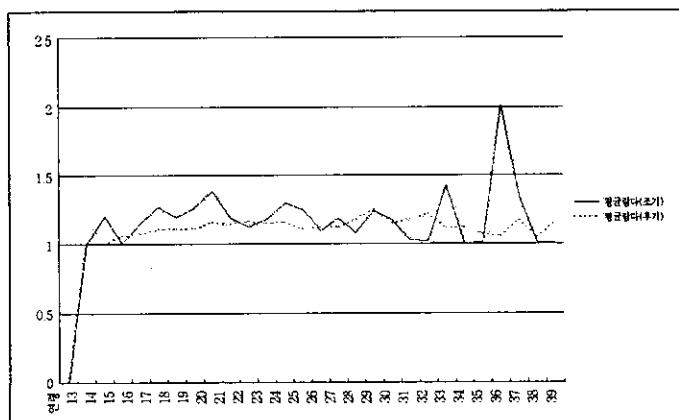
<그림 7> 조기비행자와 후기진입자의 연령별 참여율 비교



세 정도에 정점연령을 가지고 있었으며 분포의 모양은 10대 후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곧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에는 완만히 감소하는 발생율의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첫 입건된 범죄유형과 첫 입건연령, 그리고 첫 비행연령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 정점연령이 폭력범죄로 첫 입건된 집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찍 범죄경력에 진입한 사람들 일수록 참여율의 정점연령이 낮았으며, 특히 정점연령을 전후해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발생율 및 참여율과 함께 범죄경력에서 연령별로 살펴보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는 개인범죄율(individual frequency rate, or individual)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범죄율이란 어떤 개인이 어떤 한정된 기간(보통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얼마나 높은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어떤 개인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가 가지고 있는 범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범죄율은 실제 범죄과정(crime process)에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입건과정(arrest process)에 적용하면 개인입건율(individual arrest rate)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 개인입건율은 실제 범죄과정에서의 개인범죄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어떤 개인이 어떤 한정된 기간 동안 얼마나

〈그림 8〉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의 연령별 평균개인입건율의 비교



많은 입건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그림 8>은 이러한 연령별 개인입건율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개인입건율이 (사례수가 적은 높은 연령대를 제외하면) 기존의 연구결과들(Blumstein and Cohen, 1979; Loeber and Snyder, 1990)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조기 진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입건율을 일생을 통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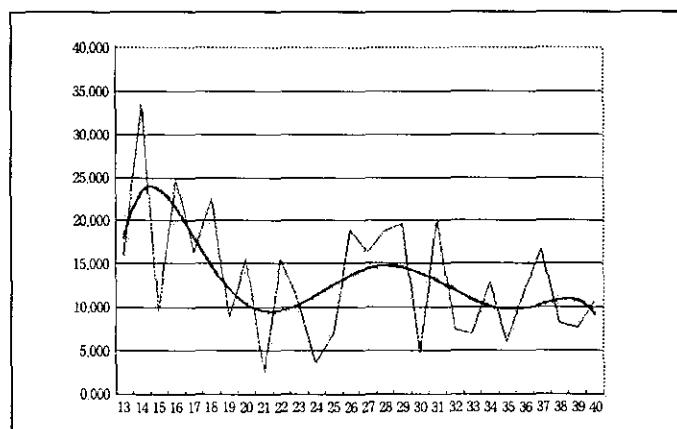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연령별 개인입건율의 분포는 연령별 입건율 및 연령별 참여율의 분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참여율의 분포가 10대 후반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일반적인 연령-범죄곡선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면, 연령별 평균 개인입건율의 분포는 일생을 통해 매우 안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체의 연령-범죄곡선이 범죄자의 개인범죄율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참여율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자기보고식 자료에 나타난 연령-범죄곡선

여기서는 공식통계나 기록이 아닌 자기보고식 자료에서의 연령-범죄곡선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의 <그림 9>는 만 13세에서 만 40세까지의 연령별 범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앞의 두 자료에 비해서 훨씬 이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앞의 공식기록을 이용한 자료가 만 20세에 범죄의 정점을 이루는데 비해서, 자기보고식 자료에서는 만 14세에 이미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다가, 다시 20대 후반에 작은 봉우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점점 완만하게 범죄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정점연령이 자기보고식 자료에서는 훨씬 일찍 나타난다는 점과, 두 번째는 개별적인 공식기록에 기초한 연령-범죄곡선에서 나타난 두 봉우리 현상, 즉 만 20세와 만 24세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고 왼쪽에는 가장 큰 봉우리가 오른쪽에는 작은 봉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서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우리가 다른 자료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자기보고식 자료가 재범이 상 수용소에서 조사되었고, 따라서 지속적인 범죄자집단이 많이 표집되었기 때문일

〈그림 9〉 자기보고식 자료에서의 연령-범죄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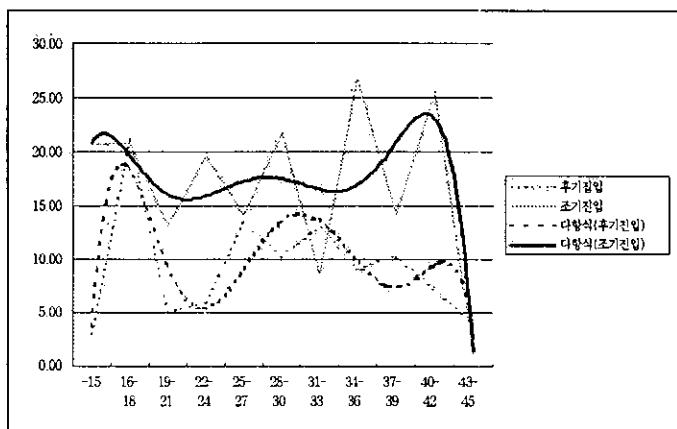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의 〈그림 10〉은 범죄경력에의 진입연령별로 연령-범죄곡선을 살펴 본 것이다. 우선 범죄경력에 늦게 진입한 후기진입자의 경우 보다 피크가 높고 일반적인 형태, 즉 10대 후반에 피크를 이루고 후에 점점 감소하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비해, 조기진입자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범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만 34세에서 만 36세 사이에 정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대부분 재범이상의 중범죄자들로 구성된 이유도 있지만,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의 연령-범죄곡선의 모양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정점연령을 전후하여 청소년기한 정형 범죄자(후기진입자)의 참여율의 증가에 의해 범죄율의 정점이 나타난다는 모피트의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 그림은 한국에서 군입대 시기, 즉 만 20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무력화효과가 조기진입자보다는 주로 후기진입자의 급격한 범죄율 감소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기에 범죄경력에 진입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따라서 조기진입자의 경우 군입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여전히 사회에서 활동이 가능한 형태의 군복무(예를 들어 예전의 방위복무)를 통해 무력화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후기진입자의 경우 실형을 받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기 진입자에 비해 매우 적을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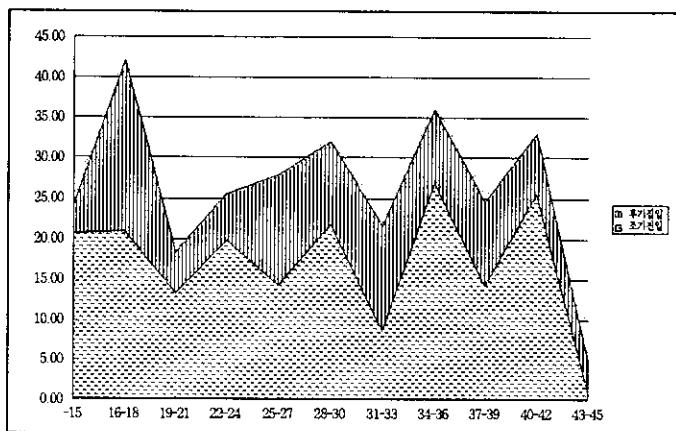
〈그림 10〉 진입연령에 따라 살펴 본 연령-범죄곡선



이 기간 동안에 범죄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개별적 공식기록을 이용한 분석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준다. 앞의 분석에 의하면, 연령-범죄곡선을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로 나누어 보았을 때, 10대 후반에 높은 정점연령을 보이는 현상이 후기진입자보다는 조기진입자의 기여에 의해 훨씬 더 잘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서, 여기에서의 결과는 오히려 후기진입자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음의 〈그림 11〉에서 보다 잘 알 수 있는데, 이 그림은 연령-범죄곡선을 조기진입자가 설명하는 부분과 후기진입자가 설명하는 부분으로 각각 나누어 그 면적을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의 맨 위에 나타나는 전체 연령-범죄곡선을 보면, 10대 후반에 정점을 이루는 현상이 후기진입자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조기진입자의 경우 이 시기에 별다른 증가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후기진입자의 경우 군복무가 끝날 즈음인 20대 중반 정도의 시기에 다시 약간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조기진입자의 경우 대체로 일생을 통해 일정한 범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피트(Moffitt, 1993)의 주장, 즉 조기진입자의 경우 매우 일정한 정도의 범죄를 매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반면, 후기진입자의 경우 청소년기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림 11〉 연령-범죄곡선에서의 집단별 구성비



V.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의 범죄통계에서 나타나는 정반대의 현상, 다시 말해서 좌경편포하는 형태의 연령-범죄곡선은 각각 공식기록과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한 두 개별적인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정규분포 또는 좌경편포하는 연령-범죄곡선은 한국의 경기불황과 같은 특수한 요인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이 다른 외국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개별적 공식기록과 자기보고식 자료 모두에서 만 20세를 전후하여 골짜기를 이루고 양쪽에 크고 작은 두 봉우리를 이루는 특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범죄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시점과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군입대로 인한 무력화 효과(incapacitation effect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초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 중 어느 집단이 더 많이 기여하는 것인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것을 살펴

볼 수 있는 두 자료, 즉 개별적 공식기록에 기초한 자료와 자기보고식 자료가 서로 모순되는 분포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식기록을 이용한 자료는 오히려 조기진입자들이 연령-범죄곡선에 더 기여하는, 즉 일반적인 형태에 더 가까운 분포를 나타내는데 비해, 후기진입자들은 비슷한 시기에 정점을 보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일정한 빈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자기보고식 자료에 의한 분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즉 조기진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범죄율을 보여주지만, 후기진입자의 경우 거의 정확히 두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를 가진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은 최소한 조기진입자와 후기진입자가 유사한 정도로 연령-범죄곡선에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기여한다는 갈프레더슨과 허쉬의 설명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히려 자기보고식 자료에 좀더 비중을 준다면, 이것은 모피트의 설명과 같이 연령-범죄곡선이 후기진입자의 급격한 증가와 완만한 감소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의 만 20세 전후의 무력화효과가 후기진입자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연령범죄곡선의 특성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만 20세를 전후해서 군입대의 무력화효과가 나타난다는 점과, 둘째로 상당히 장기간의 범죄통계를 고려하더라도 공식통계상에서 연령-범죄곡선의 정점연령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IMF를 전후하여 나타난 불황과 실업으로 인하여 공식통계상의 범죄연령곡선이 기형적인 모양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고령자들이 범죄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력범죄자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자료들은 90년 이전의 공식통계와 다른 개별적 자료들을 통해 볼 때, 대체로 연령-범죄곡선이 우경편포하는 일반적인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포의 모습은 갈프레더슨과 허쉬의 설명과는 달리,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불황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박철현 (1999a), “범죄경력의 발전이론: 상호작용 영역의 확대와 합리적 선택,” *한국사회문화학회. 《사회와문화》* 11, 71-86.
- _____, (1999b), “범죄경력의 발전에 관한 연구: 경찰 및 교정기록을 통한 종단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0), *《교도소 재입소자의 재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Blumstein, Alfred and Jacqueline Cohen (1979), “Estimation of Individual Crime Rates from Arrest Record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0.
- Blumstein, Alfred, and Jacqueline Cohen and David P. Farrington (1988a),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
- _____, (1988b), “Longitudinal and Criminal Career Research: Further Clarifications,” *Criminology* 26.
- Elliott, Delbert S., Suzanne S. Ageton, and David Huizinga (1978), *1977 Self-reported Delinquency Estimates by Sex, Race, Class and Age*. National Youth Survey Report, Boulder: Behavioral Research Institute.
- Farrington, David P. (1986), “Age and Crime,” M. Tonry and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ume 7,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ttfredson, Michael, and Travis Hirschi (1986), “The True Value of Lambda Would Appear to be Zero: An Essay on Career Criminals, Criminal Careers, Selective Incapacitation, Cohort Studies, and Related Topics,” *Criminology* 24.
- _____, (1987), “The Methodological Adequacy of Longitudinal Research on Crime,” *Criminology* 25.
- _____, (1988), “Science, Public Policy, and The Career Paradigm,” *Criminology* 26.
- _____,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ve, Walter R. (1985), “The Effect of Age and Gender on Deviant Behavior: A Biopsychosocial Perspective,” Alice S. Rossi (Eds.), *Gender and the Life Course*, Chicago: Aldine.
- Greenberg, David (1977), “Delinquency and the Age Structure of Society,”

Contemporary Crises. April.

- Greenberg, David (1985). "Age, Crime, and Social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 Hagan, John and Alberto Palloni (1988). "Crimes as Social Events in the Life Course: Reconceiving a Criminological Controversy," *Criminology* 26.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 _____, (1985). "Age and Crime, Logic and Scholarship: Comment on Greenber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 _____, (1986). "Th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Criminality," Timothy F. Hartnagel and Robert A. Silverman (Eds.), *Critique and Explanation: Essays in Honor of Gwynne Nettler*,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Laub, John H (1983). "Urbanism, Race and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 Loeber, Rolf and Howard N. Snyder (1990). "Rate of Offending in Juvenile Careers: Findings of Constancy and Change in Lambda," *Criminology* 28.
- Moffitt, Terrie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 Patterson, G. R., Barbara D. DeBaryshe, and Elizabeth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 Tittle, Charles R.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Tittle, Charles R. (1988). "Two Empirical Regularities (Maybe) in Search of an Explanation: Commentary on the Age/Crime Debate," *Criminology* 26.

(2001. 10. 13. 접수: 2001. 12. 2. 채택)

abstract

Age-Crime Curve in Korea

Cheolhyun Park

This is a study on age-crime curve in Korea. Three data was used in this study as following: First is the crime statistics as aggregated data. Second is the police record($N=3,541$ offences) of the male ex-offenders($N=988$) who have been released in eleven prisons in 1987 as individual data. Third is the self-reported group-interview data($N=10,198$ offences) administered to the male prisoners($N=979$) in ten correctional facilities including eight adult prisons, one juvenile prison and one juvenile training center as another individual data.

Generally, the right-skewness of age-crime curve has been explained through the difference of crime rate between early starters and late starters. Moffitt explains that this is because of the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the juvenile period of adolescence-limited offenders, but Godtfredson and Hirschi explain that this is because of a similar distribution in the crime rate of both early starters and late starter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Godtfredson and Hirschi's explanation on the generality of age-crime-curve distribution is correct, but this can be modified by various factors like a economic crisis. And the peak age of juvenile period is consistent with the Moffitt's hypothesis that the peak age i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crime rate of late starters, not with Godtfredson and Hirschi's one.

Key Words: age-crime curve, age and crime, peak age, participation rate, arrest rate, individual crime rate